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0. 5.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여성가족과]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

제 안 설명서

설명자: 여성가족과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부담금 사용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 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동권리와 권리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의 번 호	안 0082031
-------------	------------------

제출일자: 2020. 5. 28.
제출자: 달서구청장
(여성기족과장)

1. 제안이유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1) 개정 명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나.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안 제1조)

1)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

다.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안 제4조)

1)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운영

라.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안 제12조)

1)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2)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마.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안 제13조)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 조치 근거 조항 마련

3. 참고사항

- 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붙임 1] 참조
-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2] 참조
- 다. 관계법령: [붙임 3] 참조
 - 1)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
- 라.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편성(회비 5,000,000원)

[붙임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2015. 9. 14. 제정

2016. 11. 16. 개정

2017. 11. 3. 개정

2018. 9. 13. 개정

2019. 9. 24.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24.)

제2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개정 2019. 9.24.)

제4조[임원 및 조직]

-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11.16.)
-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개정 2017.11.3.)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3.)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개정 2017.11.3., 2019. 9.24.)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3.)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된다. (개정 2017.11.3.)

②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3.)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개정 2016.11.16.)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2019.9.24.)

-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 9.24.)
-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3.)

-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24.)
-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24.)
-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신설 2019. 9.24.)
-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신설 2019. 9.24.)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
-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7.11.3.)
-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신설 2019. 9.24.)

제14조[규약개정]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u> <u>지방정부협의회 규약</u>	<u>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u> <u>지방정부협의회 규약</u>
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u>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u> (이하 “협의회”라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 ----- ----- <u>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u> ----- -----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4. (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협의회는 “ <u>별표1</u> ”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 의장이 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 <u>별표</u> ”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 의장이 된다.
제4조[임원 및 조직] ① ~ ③ (생 략) <u>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 2·3과 같다.</u> <u>(개정 2017.11.3.)</u>	제4조[임원 및 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u>
제5조~제11조 (생 략)	제5조~제11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p> <p>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u>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u>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 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p>	<p>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p> <p>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u>참여자치단체가</u>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u>< 신 설 ></u></p> <p>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p><u>< 신 설 ></u></p> <p>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 함은 회원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p> <p>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 삭 제 ></u></p> <p>5.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p> <p>6.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p> <p>7.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사업</p> <p>8.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p>
<p><u>< 신 설 ></u></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p> <p>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p> <p>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7.11.3.)</p> <p><u>< 신 설 ></u></p>	<p>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제14조~제16조 (생 략)	제14조~제16조 (현행과 같음)
<u>[별표 2] 공동사무국의 조직도</u>	<u>< 삭 제 ></u>
<u>[별표 3] 공동사무국의 업무분장표</u>	<u>< 삭 제 ></u>

[불임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 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 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 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